



제326회 임시회

2014.01.21.

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2014년 01월 08일

○ 회부일자: 2014년 01월 09일

3. 제안이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 정비가 필요한 조례를 전수조사하여 현행 법령에 맞도록 바르게 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의 내용 중 인용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항”, “목” 변경(안 제1조)

나. 「충청북도교육청 체육진흥 및 표창 등에 관한 조례」의 내용 중 인용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의 “조”, “항”과 조문의 내용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변경(안 제2조)

다.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의 내용 중 인용법령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조”, “항” 변경과 시행령을 추가(안 제3조)

5. 검토의견

-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는 제4조제1항제4호 중 “영 제25조제4호카목에 의한”을 “영 제25조제1항제4호차목에 따른”으로 하고,
- 「충청북도교육청 체육진흥 및 표창 등에 관한 조례」는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로,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2조제1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며,
-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는 제2조제5항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로 하는 것으로,
-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을 바르게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계 법령 발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11.23.] [대통령령 제24860호, 2013.11.20.]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4.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차.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53호, 2013.3.23.]

제13조(대한민국체육상 등) ① 국가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매년 대한민국체육상을 수여한다.

1. 우수 선수로서 국민체육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2. 체육에 관한 연구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3. 체육지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국민체육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상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행하는 표창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2013.12.30.] [법률 제12128호, 2013.12.30.]

제34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둔다.

②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교육지원청에 교육장을 두되 장학관으로 보하고, 그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교육지원청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3.6.19.] [법률 제11574호, 2012.12.18.]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③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6.19.] [대통령령 제24567호, 2013.5.31.]

제25조(성범죄의 경력 조회) ① 법 제5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교육장 또는 법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은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이하 "취업자"라 한다)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예정자"라 한다)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이하 "취업제한대상자"라 한다)인지 여부만을 확인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성범죄의 경력 조회, 제2항에 따른 동의서 및 제3항에 따른 회신의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